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

제정 2020. 1. 6. (규정 제33호)

일부개정 2020. 6. 3. (규정 제40호)

일부개정 2022. 2. 21. (규정 제52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회의 참석ㆍ강의 및 원고료 등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문화원의 임ㆍ직원 및 외부인사가 집필한 원고와 보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, 자문회의, 심사ㆍ평가ㆍ강연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등에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대상) ① 원고료는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고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② 문화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회의, 자문회의, 심사, 평가, 강연, 강의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.

제4조(지급액) ① 원고료 지급기준액은 [별표 1]과 같다.

② 회의 수당 등 지급기준액은 [별표 2]와 같다. 다만, 원장이 저명도, 회의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매수산정) 원고의 매수 산정과 관련한 형식 및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.

제6조(지급일) 원고료 지급은 원고의 납품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제7조(지침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 6. 3.>

부 칙 (2020. 1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6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 2. 2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|  |
| --- |
| ■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[별표 1] |
|  |
| 원고료 지급 기준 (제4조 제1항 관련) |

**가. 원고료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내 용** | **단 위** | **지 급 액(매당)** |
| 국  어 | ◦ 논문 | 원고지 1매 | 15,000원이내 |
| ◦ 평론, 수필, 제언, 꽁트 | 13,000원이내 |
| ◦ 시(詩) | 편 당 | 60,000원이내 |
| ◦ 부록 및 자료 | A4용지 1매 | 6,000원이내 |
| ◦ 권두언 | 원고지 1매 | 15,000원이내 |
| 외  국 어 | ◦ 논문 | 원고지 1매 | 20,000원이내 |
| ◦ 전문분야에 관한 평론, 수필 | 15,000원이내 |
| ◦ 부록 및 자료 | A4용지 1매 | 7,000원이내 |

※ 원고 형식별 지급 규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‘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’에 따른다.

**나. 사진료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등급** | **단가(1컷)** | | **경력기준** | |
| **디지털** | **아날로그**  **(원판)** |
| A등급 | 50,000원  이하 | 55,000원  이하 |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| 10년 이상  (연간 1회 이상) |
|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| 10년 이상 또는  30회 이상 |
| B등급 | 40,000원  이하 | 45,000원  이하 |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~ 10년 미만 |
|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~ 10년 미만 또는  15회 ~ 30회 미만 |
| C등급 | 30,000원  이하 | 35,000원  이하 |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이하 |
|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미만 또는  15회 미만 |

※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

※ 단가는 2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, 후보정작업을 포함함

※ 촬영대상, 촬영기간, 연출 필요 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

**다. 일러스트(삽화)료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 분** | **지급액** | **비 고** |
| 표지용 | 500,000원 | 규정을 초과하는 유명작가 등의 경우는 별도 결재 |
| 스토리형 | 200,000원 |
| 단순형 | 100,000원 |
| 표제컷 | 50,000원 |

**라. 고전문헌 번역률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등급** | **역사문헌** | **한국문집** | **특수고전** |
| S | 19,500원 | 24,000원 | 25,500원 |
| A | 17,500원 | 21,500원 | 20,500원 |
| B | 15,500원 | 19,000원 | 18,500원 |
| C | - | - | 16,500원 |

※ 등급은 譯者의 번역 능력에 따른 구분

※ 단가는 원고지 200자 1매 기준

※ 역사문헌 : 조선왕조실록, 승정원일기 등의 역사적 문헌 자료

※ 한국문집 : 개인 문집, 서찰 등의 자료

※ 특수고전 : 역사문헌자료를 제외한 지리지 등의 고전 자료

|  |
| --- |
| ■ 콘텐츠 대가 및 회의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2. 2. 21.> |
|  |
| 회의 수당 등 지급 기준 (제4조 제2항 관련)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구 분** | **대 상 자** | **비 고** |
| 학술회의 수당 | ㆍ좌 장 : 300,000원~500,000원  ㆍ사회자 : 150,000원~400,000원  ㆍ발표자 : 300,000원~600,000원  ㆍ토론자 : 150,000원~400,000원 | 저명도, 연구경력,  연구실적,  회의시간,  회의내용  등을 감안하여  적용 |
| 초청강연회 수당 | ㆍ국내인사 : 300,000원~1,000,000원  ㆍ해외인사 : 300,000원~1,500,000원 |
| 특강 수당 | ㆍ최초 1시간 50,000원  ㆍ1시간 초과시 마다 30,000원  ※ 직원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|
| 연구과제 자문 수당 | ㆍ자문회의 참석  : 50,000원~100,000원  ㆍ집필자문(회의 불참 시)  : 자문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|
| 이사회 참석 수당 | 100,000원 |
|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| 100,000원 |
| 문화학교 운영위원회 수당 | 100,000원 |
| 기타 위원회 참석 수당 | 100,000원 |
| 직원채용 심사위원 수당 | 100,000원 |